「회사법」

(제 1 조-제 25 조)

- 국 가 · 지 역: 대만
- 제 정 일: 1929년 12월 7일
- 개 정 일: 2018년 7월 6일
- 공 포 일: 2018년 8월 1일
- 시 행 일: 2018년 11월 1일

원문	번역문
第一章 總則	제 1 장 총칙
第一條 (公司之定義) 本法所稱公司，謂以營利為目的，依照本法組織、登記、成立之社團法人。 公司經營業務，應遵守法令及商業倫理規範，得採行增進公共利益之行為，以善盡其社會責任。	제 1 조 (회사에 대한 정의) 이 법에서 회사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조직하고 등기하여 설립하는 사단법인이다. 회사 경영 업무는 법령 및 상업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회사의 책임과 최선으로 공공 이익을 증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第二條 (公司種類)	제 2 조 (회사 종류)

公司分為左列四種： 一、無限公司：指二人以上股東所組織，對公司債務負連帶無限清償責任之公司。 二、有限公司：由一人以上股東所組織，就其出資額為限，對公司負其責任之公司。 三、兩合公司：指一人以上無限責任股東，與一人以上有限責任股東所組織，其無限責任股東對公司債務負連帶無限清償責任；有限責任股東就其出資額為限，對公司負其責任之公司。 四、股份有限公司：指二人以上股東或政府、法人股東一人所組織，全部資本分為股份；股東就其所認股份，對公司負其責任之公司。 公司名稱，應標明公司之種類。	회사는 아래의 4 종류로 구분한다. 1. 무한회사 : 2 인 이상의 주주가 조직하고 회사 채무를 연대 부담하여 청산 책임을 지는 회사 2. 유한회사 : 1 인 이상의 주주가 조직하고 출자금액에 한정하여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회사 3. 양합회사 : 1 인 이상의 무한책임 주주가 1 인 이상의 유한책임 주주와 함께 회사를 조직하고 해당 무한책임 주주가 회사 채무를 연대 부담하여 청산 책임을 지는 회사 4. 주식유한회사 : 2 인 이상의 주주 또는 정부·법인 주주 1 인이 조직하고, 자본 전부를 주식으로 나누는 회사 ; 주주는 소유하는 주식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회사 명칭에는 회사의 종류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한다.
第三條　(公司住所) 公司以其本公司所在地為住所。 本法所稱本公司，為公司依法首先設立，以管轄全部組織之總機構；所稱分公司，為受本公司管	**제 3 조 （회사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사의 소재지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본사란 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조직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할

轄之分支機構。	하는 기구이다. 지점은 본사의 관할을 받는 기구이다.
第四條　(外國公司) 本法所稱外國公司，謂以營利為目的，依照外國法律組織登記之公司。 外國公司，於法令限制內，與中華民國公司有同一之權利能力。	**제 4 조 (외국 회사)** 이 법에서 말하는 외국 회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외국 법률에 따라 조직 및 등기되는 회사를 말한다. 외국 회사는 법령의 제한 안에서 중화민국 회사와 동일한 권리와 능력을 향유한다.
第五條　(主管機關) 本法所稱主管機關：在中央為經濟部；在直轄市為直轄市政府。 中央主管機關得委任所屬機關、委託或委辦其他機關辦理本法所規定之事項。	**제 5 조 (주무 기관)** 이 법에서 말하는 주무 기관이란 중앙에서는 경제부이고 직할시에서는 직할시 정부이다. 중앙 주무기관은 이 법이 규정하는 사항을 소속기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그 밖의 기관이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第六條　(公司成立要件) 公司非在中央主管機關登記後，不得成立。	**제 6 조 (회사 성립 요건)** 회사는 중앙 주무기관에 등기하지 아니하고 설립할 수 없다.
第七條 (公司登記之查核簽證) 公司申請設立登記之資本額，應經會計師查核簽證；公司應於申請設立登記時或設立登記後三十日內，檢送經會計師查核簽證之文件。	**제 7 조 (회사 등기의 대조 검증)**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회사는자본금 액수에 대하여 회계사의 대조 검증을 받아야 한다. 회사는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때 또는 설립등기를 받은 뒤 30 일 안에 회계사의 대조 검증을 받았다는 서면

	증명을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公司申請變更登記之資本額，應先經會計師查核簽證。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회사는자본금 액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회계사의 대조 검증을 받아야 한다.
前二項查核簽證之辦法，由中央主管機關定之。	앞의 두 항에서 말하는 대조 검증의 방법은 중앙 주무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八條　(公司負責人)	**제 8 조 (회사 책임자)**
本法所稱公司負責人：在無限公司、兩合公司為執行業務或代表公司之股東；在有限公司、股份有限公司為董事。	이 법에서 말하는 회사 책임자는 무한회사·양합회사에서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의 주주를 대표하는 자이다. 유한회사·주식유한회사에서는 이사이다.
公司之經理人、清算人或臨時管理人，股份有限公司之發起人、監察人、檢查人、重整人或重整監督人，在執行職務範圍內，亦為公司負責人。	회사 경영자·청산인·임시 관리자와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감찰인·검사인·정리인·정리 및 감찰인은 집행하는 업무 범위 안에서 회사 책임자일 수 있다.
公司之非董事，而實質上執行董事業務或實質控制公司之人事、財務或業務經營而實質指揮董事執行業務者，與本法董事同負民事、刑事及行政罰之責任。但政府為發展經濟、促進社會安定或其他增進公共利益等情形，對政府指派之董事所為之指揮，不適用之。	회사의 이사가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실질적으로 회사 인사·재무·경영에 대한 관리·통제를 하거나, 실질적으로 이사가 집행하는 업무를 지휘하는 경우 민사·형사·행정벌에 대하여 이 법의 이사와 동등하게 책임을 진다. 다만 정부가 경제 발전·사회안정 촉진·공공이익 증진 등을 위하여 정부가 지정하고 파견하여 이사가 하

	는 업무를 지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九條　(公司應收之股款，股東未實際繳納之處罰)	**제 9 조　(회사가 수납하여야 하는 주주 자본금을 주주가 실제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벌)**
公司應收之股款，股東並未實際繳納，而以申請文件表明收足，或股東雖已繳納而於登記後將股款發還股東，或任由股東收回者，公司負責人各處五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科或併科新臺幣五十萬元以上二百五十萬元以下罰金。	회사가 수납하여야 하는 주주 자본금을 주주가 실제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신청서에는 수납하였다고 기재하거나, 주주가 납부하였지만 등기한 뒤 자본금을 주주에게 돌려주거나, 어떠한 사유로든지 주주가 회수하는 경우 회사 책임자는 각각 5 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하거나 신 타이완 달러 5 만 위안 이상 2 백 5 십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한다.
有前項情事時，公司負責人應與各該股東連帶賠償公司或第三人因此所受之損害。	앞의 두 항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회사 책임자는 각 해당 주주와 연대하여 회사 또는 제 3 자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第一項經法院判決有罪確定後，由中央主管機關撤銷或廢止其登記。但判決確定前，已為補正者，不在此限。	제 1 항의 상황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 확정된 뒤에는 중앙 주무 기관은 해당 회사의 등기를 취소 또는 폐지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보정하는 경우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公司之負責人、代理人、受僱人或其他從業人員以犯刑法偽造文書印文罪章之罪辦理設立或其他	회사 책임자·대리인·고용인·그 밖의 업무자가 형법이 규정하는 문서 인감 위조의 죄를 범하여 받

登記，經法院判決有罪確定後，由中央主管機關依職權或依利害關係人之申請撤銷或廢止其登記。	은 설립등기 또는 그 밖의 등기는 법원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뒤에 중앙 주무 기관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등기를 취소 또는 폐지한다.
第十條　(命令解散) 公司有下列情事之一者，主管機關得依職權或利害關係人之申請，命令解散之：	**제 10 조 （해산 명령）** 회사가 아래의 상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一、公司設立登記後六個月尚未開始營業。但已辦妥延展登記者，不在此限。	1. 회사 설립등기를 받은 뒤 6 개월 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이미 연장등기를 완전하게 처리한 경우는 제외한다.
二、開始營業後自行停止營業六個月以上。但已辦妥停業登記者，不在此限。	2. 영업을 개시한 뒤 자체적으로 영업을 6 개월 이상 중지하는 경우. 다만, 이미 연장등기를 완전하게 처리한 경우는 제외한다.
三、公司名稱經法院判決確定不得使用，公司於判決確定後六個月內尚未辦妥名稱變更登記，並經主管機關令其限期辦理仍未辦妥。	3. 회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하였는데, 회사가 판결이 확정된지 6 개월 뒤에도 명칭 변경등기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주무 기관이 처리기한을 지정하여도 여전히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四、未於第七條第一項所定期限內，檢送經會計師查核簽證之文件者。但於主管機關命令	4. 제 7 조제 1 항이 규정하는 기한 안에 회계사의 대조 검증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

解散前已檢送者，不在此限。	우. 다만 주무 기관의 해산 명령 전에 이미 검증 문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第十一條　(裁定解散) 公司之經營，有顯著困難或重大損害時，法院得據股東之聲請，於徵詢主管機關及目的事業中央主管機關意見，並通知公司提出答辯後，裁定解散。 前項聲請，在股份有限公司，應有繼續六個月以上持有已發行股份總數百分之十以上股份之股東提出之。	**제 11 조　(해산 재정)** 회사가 경영상 현저한 곤경이나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은 주주의 청원에 따라 주무기관 및 목적사업 중앙 주무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회사에게 답변을 제출하도록 통지한 뒤 해산을 재정할 수 있다. 앞 항의 청원은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6 개월 이상 해당 상황이 지속되어 이미 발행주식 총수 100 분의 10 이상의 주주가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이다.
第十二條　(登記之效力) 公司設立登記後，有應登記之事項而不登記，或已登記之事項有變更而不為變更之登記者，不得以其事項對抗第三人。	**제 12 조　(등기의 효력)** 회사가 설립등기를 한 뒤에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데 변경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항은 제 3 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第十三條　(公司轉投資之限制) 公司不得為他公司無限責任股東或合夥事業之合夥人。 公開發行股票之公司為他公司有	**제 13 조　(회사의 출자전환에 대한 제한)** 회사는 타사의 무한책임 주주 또는 파트너십 사업의 파트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가 타사

限責任股東時，其所有投資總額，除以投資為專業或公司章程另有規定或經代表已發行股份總數三分之二以上股東出席，以出席股東表決權過半數同意之股東會決議者外，不得超過本公司實收股本百分之四十。	의 유한책임 주주인 경우, 해당 소유 투자총액은, 전문투자이거나 회사 장정이 별도로 규정하거나 이미 발행한 주식 총수 3 분의 2 이상의 주주 출석을 통한 의견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회 결의에서 표결권이 있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본사의 실제 납입자본 100 분의 40 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出席股東之股份總數不足前項定額者，得以有代表已發行股份總數過半數股東之出席，出席股東表決權三分之二以上之同意行之。	출석 주주의 주식총수가 앞 항에서 정하는 액수에 다다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 총수 과반수의 주주 출석을 통한 의견은 표결권이 있는 출석 주주의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할 수 있다.
前二項出席股東股份總數及表決權數，章程有較高之規定者，從其規定。	앞의 두 항의 출석 주주 주식 총수 및 표결권 수를 회사 정관이 상대적으로 높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公司因接受被投資公司以盈餘或公積增資配股所得之股份，不計入第二項投資總額。	회사가 잉여 또는 적립금으로 증자하여 배분받은 피투자회사의 주식은 제 2 항의 투자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公司負責人違反第一項或第二項規定時，應賠償公司因此所受之損害。	회사 책임자가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한다.
第十四條　(刪除)	제 14 조 （삭제）

(刪除)	(삭제)
第十五條　(貸款之限制) 公司之資金，除有左列各款情形外，不得貸與股東或任何他人： 一、公司間或與行號間有業務往來者。 二、公司間或與行號間有短期融通資金之必要者。融資金額不得超過貸與企業淨值的百分之四十。 公司負責人違反前項規定時，應與借用人連帶負返還責任；如公司受有損害者，亦應由其負損害賠償責任。	**제 15 조　(대출의 제한)** 회사의 자금은 아래 상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 또는 그 밖의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1. 회사 간 또는 상점 간 업무상 거래인 경우. 2. 회사 간 또는 상점 간 단기 융자가 필요한 경우. 융자 금액은 대여하는 기업의 순자산가치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할 수 없다. 회사 책임자가 앞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차용인과 연대하여 반환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第十六條　(公司為保證人之限制) 公司除依其他法律或公司章程規定得為保證者外，不得為任何保證人。 公司負責人違反前項規定時，應自負保證責任，如公司受有損害時，亦應負賠償責任。	**제 16 조　(회사가 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한 제한)** 회사는 그 밖의 법률 또는 회사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인이 될 수 없다. 회사 책임자가 앞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스스로 보증책임을 져야 하고, 만일 회사가 손해를 입는 때에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도 져야 한다.

第十七條　(特許之業務) 公司業務，依法律或基於法律授權所定之命令，須經政府許可者，於領得許可文件後，方得申請公司登記。 前項業務之許可，經目的事業主管機關撤銷或廢止確定者，應由各該目的事業主管機關，通知中央主管機關，撤銷或廢止其公司登記或部分登記事項。	제 17 조 (특별히 허가되는 업무) 회사 업무는 법률 또는 법률이 권한을 위임하여 정하는 명령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통하여 허가 문건을 취득한 뒤에 회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앞 항의 업무에 대한 허가는 목적사업 주무기관이 취소 또는 폐지를 확정한 뒤에 해당 목적사업 주무기관이 중앙 주무기관에 통지하여 해당 회사등기 또는 부분등기 사항을 취소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第十七條之一 (廢止登記) 公司之經營有違反法令受勒令歇業處分確定者，應由處分機關通知中央主管機關，廢止其公司登記或部分登記事項。	제 17 조의 1 (등기 폐지) 회사 경영이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강제로 확정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내린 기관이 중앙 주무기관에 통지하여 해당 회사등기 또는 부분등기 사항을 폐지하여야 한다.
第十八條 (公司名稱專用) 公司名稱，應使用我國文字，且不得與他公司或有限合夥名稱相同。二公司或公司與有限合夥名稱中標明不同業務種類或可資區別之文字者，視為不相同。	제 18 조 (회사 명칭의 전용) 회사 명칭은 우리나라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한 파트너십의 명칭과 동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회사 또는 회사와 유한 파트너십의 명칭 가운데 업무종류가 같지 아니하거나 분별 가능한 문자로 표기되는 경우에는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간주한다.

公司所營事業除許可業務應載明於章程外，其餘不受限制。	허가 업무 이외에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고 그 나머지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公司所營事業應依中央主管機關所定營業項目代碼表登記。已設立登記之公司，其所營事業為文字敘述者，應於變更所營事業時，依代碼表規定辦理。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주무기관이 영업항목코드표 등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미 설립등기를 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문자로 서술하는 경우에는 영위하는 사업을 변경하는 때에 코드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公司不得使用易於使人誤認其與政府機關、公益團體有關或妨害公共秩序或善良風俗之名稱。	회사는 정부기관·공익단체와 관련이 있다고 오인하기 쉽거나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저해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公司名稱及業務，於公司登記前應先申請核准，並保留一定期間；其審核準則，由中央主管機關定之。	회사 명칭 및 업무는 회사가 등기하기 전에 먼저 비준을 신청하고, 일정기간 보류하여야 한다. 심사·비준 준칙은 중앙주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十九條　(未登記而營業之限制)	**제 19 조 (등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것에 대한 제한)**
未經設立登記，不得以公司名義經營業務或為其他法律行為。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회사 명의로 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밖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違反前項規定者，行為人處一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科或併科新臺幣十五萬元以下罰金，並自	앞 항 규정의 위반하는 경우 행위자는 1 년 이하의 유기징역·단기징역에 처하고, 신 타이완 달

負民事責任；行為人有二人以上者，連帶負民事責任，並由主管機關禁止其使用公司名稱。	러(TWD) 1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으며, 민사책임도 져야 한다. 행위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민사책임을 지고, 주무기관은 회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한다.
第二十條　(年終查核) 公司每屆會計年度終了，應將營業報告書、財務報表及盈餘分派或虧損撥補之議案，提請股東同意或股東常會承認。	**제 20 조 (연말 실사)** 회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마다 사업보고서·재무제표 및 잉여금 배분 또는 결손 보충에 대한 방안을 제청하여 주주 동의 또는 주주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公司資本額達一定數額以上或未達一定數額而達一定規模者，其財務報表，應先經會計師查核簽證；其一定數額、規模及簽證之規則，由中央主管機關定之。但公開發行股票之公司，證券主管機關另有規定者，不適用之。	회사의 자본금 액수가 일정 금액에 도달하는 경우 또는 일정 금액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지만 일정 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해당 재무제표를 회계사가 먼저 심사·검증하여야 한다. 해당 일정 금액·규모 및 검증에 대한 규칙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의 경우 증권 주무기관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前項會計師之委任、解任及報酬，準用第二十九條第一項規定。	앞 항의 회계사에 대한 임명·해임·보수 등은 제 29 조제 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一項書表，主管機關得隨時派員查核或令其限期申報；其辦	주무기관은 제 1 항의 자료 목록에 대하여 수시로 인력을 파견하

法，由中央主管機關定之。	여 심사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방법은 중앙주무기관이 정한다.
公司負責人違反第一項或第二項規定時，各處新臺幣一萬元以上五萬元以下罰鍰。規避、妨礙或拒絕前項查核或屆期不申報時，各處新臺幣二萬元以上十萬元以下罰鍰。	회사 책임자가 제 1 항 또는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각각 신 타이완 달러(TWD) 1 만 위안 이상에서 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 항의 심사를 회피·방해·거절하거나 기한마다 하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각 신 타이완 달러(TWD) 2 만 위안 이상에서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二十一條　(平時業務之檢查)	**제 21 조　(상시 업무에 대한 검사)**
主管機關得會同目的事業主管機關，隨時派員檢查公司業務及財務狀況，公司負責人不得妨礙、拒絕或規避。	주무기관은 목적사업 주무기관과 회동할 수 있으며, 수시로 인력을 파견하여 회사업무 및 재무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회사 책임자는 이를 방해·거절·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公司負責人妨礙、拒絕或規避前項檢查者，各處新臺幣二萬元以上十萬元以下罰鍰。連續妨礙、拒絕或規避者，並按次連續各處新臺幣四萬元以上二十萬元以下罰鍰。	회사 책임자가 앞 항의 검사를 방해·거절·회피하는 경우 각각 신 타이완 달러(TWD) 2 만 위안 이상에서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계속적으로 방해·거절·회피하는 경우에는 계속하는 횟수마다 각각 신 타이완 달러(TWD) 4 만 위안 이상에서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主管機關依第一項規定派員檢查時，得視需要選任會計師或律師或其他專業人員協助辦理。	주무기관이 제 1 항에 따라 인력을 파견하여 검사하는 때에 회계사 또는 변호사 또는 그 밖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협조하여 처리한다.
第二十二條　(帳表查核之方法)	**제 22 조 (체크리스트에 대한 방법)**
主管機關查核第二十條所定各項書表，或依前條檢查公司業務及財務狀況時，得令公司提出證明文件、單據、表冊及有關資料，除法律另有規定外，應保守秘密，並於收受後十五日內，查閱發還。	주무기관이 제 20 조가 정하는 각 보고서 및 표를 조사·확인하거나, 앞 조에 따라 회사업무 및 재무상황을 검사하는 때에는 회사에게 증명문서·증빙·장부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수령 후 15 일 안에 열람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公司負責人違反前項規定，拒絕提出時，各處新臺幣二萬元以上十萬元以下罰鍰。連續拒絕者，並按次連續各處新臺幣四萬元以上二十萬元以下罰鍰。	회사 책임자가 앞 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출을 거절하는 때에는 각각 신 타이완 달러(TWD) 2 만 위안 이상에서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계속적으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속하는 횟수마다 각각 신 타이완 달러(TWD) 4 만 위안 이상에서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二十二條之一　(公司應定期申	**제 22 조의 1 (회사가 중앙 주무기**

報資料至中央主管機關建置或指定之資訊平臺)	**관이 설정·지정하는 정보플랫폼에 자료를 정기보고할 의무)**
公司應每年定期將董事、監察人、經理人及持有已發行股份總數或資本總額超過百分之十之股東之姓名或名稱、國籍、出生年月日或設立登記之年月日、身分證明文件號碼、持股數或出資額及其他中央主管機關指定之事項，以電子方式申報至中央主管機關建置或指定之資訊平臺；其有變動者，並應於變動後十五日內為之。但符合一定條件之公司，不適用之。	회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사·감사인·경영인 및 기발행주식보유총수 또는 자본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국적·출생연월일 또는 설립등기를 한 연월일·신분증명서 번호·보유 주식수 또는 출자액 및 그 밖에 중앙주무기관이 지정하는 사항을 중앙 주무기관이 설정·지정하는 정보플랫폼에 전자방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이 발생한 때로부터 15 일 안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前項資料，中央主管機關應定期查核。	앞 항의 자료는 중앙 주무기관이 정기적으로 실사한다.
第一項資訊平臺之建置或指定、資料之申報期間、格式、經理人之範圍、一定條件公司之範圍、資料之蒐集、處理、利用及其費用、指定事項之內容，前項之查核程序、方式及其他應遵行事項之辦法，由中央主管機關會同法務部定之。	제 1 항의 정보플랫폼 설정 또는 지정·자료의 신고기간, 형식, 경영인의 범위, 일정 조건의 회사의 범위, 자료의 수집·처리·이용 및 관련 비용, 지정한 사항에 대한 내용과 앞 항의 실사 절차·방식·그 밖에 준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방은 중앙 주무기관이 법무부와 회동하여 정한다.
未依第一項規定申報或申報之資料不實，經中央主管機關限期通知改正，屆期未改正者，處代表	제 1 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였으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중앙 주무기

公司之董事新臺幣五萬元以上五十萬元以下罰鍰。經再限期通知改正仍未改正者，按次處新臺幣五十萬元以上五百萬元以下罰鍰，至改正為止。其情節重大者，得廢止公司登記。	관이 해당 내용을 정정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였으나, 기한이 지나도 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신 타이완 달러(TWD) 5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차 기한을 정하여 다시 통지하여도 여전히 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정하는 때까지 통지 후 미정정 횟수마다 신 타이완 달러(TWD) 50 만 위안 이상 5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회사 등기를 폐지한다.
前項情形，應於第一項之資訊平臺依次註記裁處情形。	앞 항의 상황은 제 1 항의 정보플랫폼에 횟수마다 각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第二十三條　(負責人應負違反及損害賠償之責)	**제 23 조 (책임자가 위반 및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의무)**
公司負責人應忠實執行業務並盡善良管理人之注意義務，如有違反致公司受有損害者，負損害賠償責任。	회사 책임자는 업무 집행에 충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公司負責人對於公司業務之執行，如有違反法令致他人受有損害時，對他人應與公司負連帶賠償之責。	회사 책임자는 회사 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는 때에는 타인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公司負責人對於違反第一項之規定，為自己或他人為該行為時，股東會得以決議，將該行為之所得視為公司之所得。但自所得產生後逾一年者，不在此限。	회사 책임자는 제 1 항을 위반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하는 때에는 주주회의 결의를 통하여 해당 행위로 얻는 소득을 회사의 소득으로 볼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한지 1 년이 지난 뒤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第二十四條　(解散公司之清算) 解散之公司除因合併、分割或破產而解散外，應行清算。	**제 24 조 (해산하는 회사의 청산)** 해산하는 회사는 합병·분할·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진행한다.
第二十五條　(清算中之公司) 解散之公司，於清算範圍內，視為尚未解散。	**제 25 조 (청산 중인 회사)** 해산하는 회사가 청산하는 과정에 있으면 아직 해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